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3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고용진・김수흥・김경협

기동민 · 김두관 · 윤후덕

우원식 · 정일영 · 양향자

정성호 · 김주영 · 이광재

양경숙 의원(13인)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 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안제55조의2).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 한 과세특례)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 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호의 분양권(이하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 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 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

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 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 인(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 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 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 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 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 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 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다)은 제외한다.

3. (생략)

<신 설>

② ~ ⑧ (생 략)

| <u>100분의 2</u> |
|----------------|
| <u>0</u> |
| |
| |
|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 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 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 한 세액
- ② ~ ⑧ (현행과 같음)